

▶ 특별강연 - I

유기농산물과 친환경농업

이 규 승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식품학부

서 언

농업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에 합성화학비료와 새로운 농약의 등장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영농자재 이외에도 신품종의 육성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은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30여년 간 지속되어온 생산제일주의의 농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질소 비료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과다한 비료사용이 농민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으며, 이 결과 농작물은 병·충해에 의한 피해가 증대됨으로써 살균제나 살충제의 사용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토양환경은 급격히 열악하게 되었으며 건강한 농작물의 생산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3년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저투입 적정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은 지금까지 악화되어온 농업환경을 개선, 보전하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웰빙문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외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기농업과 친환경농업에 대해 고찰해 보고,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농 축산물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 농업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

(1)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의 개념

친환경 농업은 우리나라의 농림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제도이다.

「친환경 농업」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농업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농업형태로 크게 저투입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과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투입농업은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줄이는 농업을 말하며 병충해종합방제(IPM)와 작물양분종합관리(INM) 등을 통해 농업환경의 건강성을 유지·보전시키는 농업이다. 이에 반해 유기농업은 합성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사료첨가제 등의 합성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여 행하는 농업형태이다.

(2)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의 필요성

1) 농업환경의 보전과 자연생태계 보전

농업생산량 증대라는 관행농업의 폐해를 극복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환경의 개선과 보전이 필요하며, 건전한 농업환경은 자연생태계의 복원·보전을 가져오게 된다.

2) 농가소득 증대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농산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관행농산물에 비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가소득의 증대가 기대된다.

3) 농촌의 활성화

오염된 물과 토양을 되살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는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고소득을 올리게 되면 농업인들은 농촌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도시인들은 웰빙시대에 맞춰 근교 농촌을 찾아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서 활력이 넘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농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4) WTO 대응 및 우리농산물 지킴

WTO체제 하에서 농산물 개방속도와 비율이 높아짐으로서 외국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우리의 농토에서 우리 입맛에 가장 알맞은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우리농

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동시에 외국농산물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의 여러 가지 장점을 부각시켜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업의 추진과정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 위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의 소개·보급되어졌으나 1994년 12월에 농림부에 친환경 농업과가 신설됨으로써 정부 주도의 친환경 농업정책이 시작되는 발판이 마련되어졌다.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97년에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정비하였다. 1999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화경규제지역 내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자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는 홍수예방, 지하수함양, 수질개선 등과 같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월에는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01~'05)을 수립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을 총 농산물 생산량의 5%로 확대하는 등의 친환경 농업 중장기 비전과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01년 7월부터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을 개정하였고,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2년에는 CODEX 기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유기농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2003년부터는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개선·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친환경 축산직불제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유기농업은 1866년 독일의 Liebig에 의해 비료의 식물영양학적 가치가 확인된 후, 1910년 Harber법에 의한 요소비료의 합성을 통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비료위주의 농업을 통해 생산량을 크게 진작시켰던 미국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 토양이 열악해지면서 생산성이 줄고 농경지의 사막화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또한 영국의 Haward경은 1940년 본인이 40년간 농업시험장에서 퇴비를 위주로 한 농업을 수행한 결과를

Agricultural Testament라는 책으로 출간하여 유기농업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1940년대 중반부터 관행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일부 농민들과 소비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여 유기농업관련 민간단체들을 만들어 유기농업의 보급에 앞장서왔으며, 그 결과 1972년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창립되어 현재 110여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유기농업기준을 제정하여 유기농업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로 불리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90년부터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논의하여왔으며, 1999년에는 농산물분야에 2001년에는 축산물분야에 대하여 유기식품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이 Codex 가이드라인은 유기식품의 무역 또는 통상에서 국제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의 현황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농산물의 포장유통 및 안전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 17조에 의거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를 표1과 같이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종 류	기 준
유 기 농 산 물	-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전환기유기농산물	-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무 농 약 농 산 물	-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
저 농 약 농 산 물	-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이내 사용 - 농약 살포횟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적용 -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1)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황

표2에서는 년도 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1에서 볼 때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약 17.8배나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도 약 13.7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은 저농약농산물의 비중이 농가로는 약 56.3%, 생산량으로는 약 57.8%를 점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로 인증받은 것은 농가수로 약 6.2%, 생산량으로는 약 6.9%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년도 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구 分	구 分	'99	'00	'01	'02	'03
계	생산농가 (호)	1,306	2,448	4,678	11,892	23,309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톤)	26,643	35,406	87,279	200,374	366,107
유기	생산농가 (호)	355	353	439	877	1,459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톤)	6,996	6,538	10,625	16,249	25,342
전환기	생산농가 (호)	-	-	3	628	1,297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톤)	-	-	45	4,865	8,849
무농약	생산농가 (호)	449	1,060	1,645	4,084	7,426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톤)	11,798	15,694	32,274	76,828	120,358
저농약	생산농가 (호)	502	1,035	2,591	6,303	13,127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톤)	7,849	13,174	44,334	102,432	211,558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전체 농산물 생산량 중의 비중은 1999년에 0.14%, 2001년에는 0.45% 그리고 2003년에는 약 1.8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연도별로 볼 때 저농약농산물은 '99년 502농가 7,849톤에서 2003년 13,127농가 211,558톤으로 각각 26.1배와 26.9배가 증가하였으며, 무농약재배의 경우 409농가 11,798톤에서 7,426농가 120,358톤으로 각각 16.5배와 1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에는 작목별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변화를 수록하였다.

표 3.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인증품출하량

(단위 : 톤)

년도별	종류별	계	유기	전환기	무농약	저농약
1999	곡 류	818	264		475	96
	과실류	3,034	428		218	2,388
	채소류	21,611	6,216		10,202	5,192
	서 류	822	81		569	172
	특작류	359	7		352	
	기 타	-				
	계	26,643	6,996	-	11,798	7,849
2000	곡 류	1,119	275		540	305
	과실류	5,719	624		289	4,806
	채소류	25,470	5,489		12,302	7,679
	서 류	930	149		397	384
	특작류	2,168	1		2,167	
	기 타	-				
	계	35,406	6,538	-	15,694	13,174
2001	곡 류	3,778	547		1,413	1,817
	과실류	18,451	472	45	957	16,977
	채소류	56,095	9,014		23,093	23,988
	서 류	2,630	582		797	1,252
	특작류	6,020	5		6,015	
	기 타	305	5			300
	계	87,279	10,625	45	32,274	44,334
2002	곡 류	12,243	1,211	584	6,540	3,908
	과실류	57,956	529	321	1,722	55,383
	채소류	104,205	13,368	3,797	46,749	40,291
	서 류	5,183	1,032	139	1,550	2,463
	특작류	17,306	106	21	17,111	68
	기 타	3,481	3	2	3,157	319
	계	200,374	16,249	4,865	76,828	102,432
2003	곡 류	29,533	3,211	3,665	15,262	7,395
	과실류	120,195	583	1,178	3,865	114,569
	채소류	174,514	19,845	3,639	64,916	86,114
	서 류	7,868	1,314	322	2,926	3,306
	특작류	33,800	389	45	33,193	173
	기 타	197			196	1
	계	366,107	25,342	8,849	120,358	211,558

표3에서 볼 때 친환경인증농산물은 작물별로 채소류, 과실류의 순으로 많았으며, 인삼을 포함하는 특작류와 쌀을 포함하는 곡류가 그 다음 순이었다. 그러나 유기농산물의 경우에 과실류는 년도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병·충해가 많고 비료요구도가 큰 과수에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재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2003년에 곡류 중 전환기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23.3%에 달하는 것은 쌀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친환경 쌀생산에 점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관행농업에서도 농약이나 합성화학비료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쌀생산을 위한 단위면적 당 농약사용량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저농약 인증 농산물과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최근 농림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제도가 확산·정착되면 이 제도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자신들이 재배하고 작물에 대해 품종선택, 파종시기, 비료, 농약사용 시기 및 사용량 등 재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생산이력체를 수행하게 되므로 저농약 인증 농산물과 나아가서는 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관행재배 농산물과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2) 외국의 유기농업 현황

유기농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역시 유럽연합 내 여러 나라이며, 미국, 호주, 일본 등도 최근 들어 유기농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체식품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추세가 현저하며 전체식품 중 3%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럽 여러 나라는 인증기관, 해당국가 및 EU위원회의 3자 상호감시 및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중요국가의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표4와 같다.

표 4. 선진국 유기농산물 재배면적 (2000년 기준)

구 분	재배면적(천 ha)	총 재배면적 대비 비율 (%)
영 국	473	2.5
독 일	546	3.2
이 탈 리 아	1,040	-
프 랑 스	371	1.3
네 델 란 드	28	1.4
벨 기 에	21	0.9
오 스 트 리 아	272	10.0
스 위 스	95	9.0
덴 마 크	165	6.2
스 웨 덴	139	5.1
미 국 ('97)	544	0.2

(2002, 농촌경제연구원)

표4에서 볼 때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보면 21,000ha~104만 ha까지이며 총 경지면적대비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0.2~10%로 나타나있다. 이 중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으로는 이탈리아가 100

만 ha를 넘겨 가장 넓으며, 전체 경작면적을 대비하여 볼 때 오스트리아가 10.0%로 유기농산물 재배 면적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편 유기농산물 판매금액과 전체식품 중의 비중을 표5에 수록하였다.

표 5. 선진국 유기농산물 판매액 및 비중(2000년 기준)

구 분	판매액 (백만\$)	전체식품 판매액 대비 비율(%)
영 국	987	1
독 일	2,128	1.25~1.5
이 탈 리 아	978	1
프 랑 스	846	1
네 델 란 드	210	1.2
벨 기 에	138	1
오 스 트 리 아	195	1.8
스 위 스	457	2
덴 마 크	372	2.5~3
스 웨 텐	175	0.9
미 국 ('97)	8,000	1.5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기농산물의 판매금액은 4.5억불~80억불이며 전체 식품판매금에 대한 비율을 보면 0.9~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80억불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하였고 덴마크는 2.5~3.0%로 유기농산물의 판매비중이 가장 높았다.

유기농산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향후 계속하여 증가할 전망이며 프랑스는 2005년에 2005년에 250,000호의 농가와 100만 ha의 재배면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2005년의 목표를 총 재배면적 대비 10%에 두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기농산물의 비중을 30%이상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의 문제점

친환경 인증농산물 중 국제적인 수준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환기 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해당하는 농산물이다. 저농약인증 농산물과 무농약인증 농산물은 유기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참여를 높임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인증기준이 되는 것이다.

(1) 친환경 농업기술체계 정립

농업생태계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 CODEX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업으로 더 많은 농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기술체계를 새롭게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토양비옥도 최적관리 기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

(Integrated Nutrients Management, INM)을 통해 토양 검정을 통한 적정시비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경작지 토양의 지리적 특성, 토성, 유기물 함량 등 여러 가지 토양학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토양 관리를 하여야만 토양유실의 감소와 지력유지 등을 통해 기복 없는 농업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농약사용 절감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확한 예찰기술의 확립 및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는 물론 병·해충 종합관리기술(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을 적극 활용하여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합리적인 농업용수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농업용수는 지표수와 자하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상당히 많은 농업용수들이 오염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축산단지의 지하수나 재배경력이 오랜 시설채소 재배단지 등은 질소오염수준이 상당히 높은 곳이 많다. 질소성분으로 오염된 농업용수는 토양의 염류집적을 촉진·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축산분야에서는 오염된 음용수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 등이 우려된다.

넷째,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기술을 높여야 한다. 가축의 분뇨, 도축폐기물, 벗짚 등은 물론 사용이 가능한 폐유기자원을 재활용하여 농업용 유기자원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등이 시도 되었으나 그 효과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재활용 및 처리기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적절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농약·저비료에 의한 농업도 중요하지만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의 개발과 합리적인 사용방법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2) 친환경농자재의 현황 및 문제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관해서는 친환경육성법 시행규칙 별표1에 제시되어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농자재는 크게 토양개량과 작물생산 시 비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자재와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농자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표6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를 수록하였다.

표 6. 국내에서 사용되는 친환경농자재의 구분

구 분	유기농 자재의 종류	
방제	기능	목초액, 키토산, 산화전위수, 현미식초
비료성분	기능	수용성 인산, 그린 칼슘, 아미노산, 청초액비
농약	+ 비료	기능 천혜녹즙, 한방영양제, 토착미생물 배양제, 유산균
생육촉진	기능	미네랄 A·B·C, 과일 효소, 바로돈, 천연식초
토양개량	기능	목탄, 피트모스, 맥반석, 규산, 석회

표6에서 제시된 유기농업용 친환경 농자재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친환경농자재로 인정받기 위한 연구결과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들 농자재들이 친환경 농자재로 등재된 것은 철저한 연구와 체계적인 사용의 결과가 아니라 친환경관련 농업 및 농민단체 등에서 사용되던 자재를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작물별로 사용량이나 사용시기 등이 과학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농민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과다 사용하므로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들 농자재들의 효과가 농약이나 합성화학비료를 사용할 때처럼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농민과 제조·판매 업체와의 불신의 가능성에 있을 뿐 아니라 검증기관에서도 효과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제시하지 못 하므로서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친환경농자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과정 중에 품질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성분 함량이나 성능, 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CODEX 유기농산물의 기준

「유기식품의 생산·가공·표시·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은 2001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에 기술한 제목에서 보듯이 이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많은 량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의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인증제와 유사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특별히 유의할 사항에 관해서 발췌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토양의 비옥화 및 토질개선에 사용되는 물질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분뇨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즉, 공장형 농법(factory farming)을 통해 생산된 퇴비는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공장형 농법이란 유기농업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료, 수의약품에 의존하는 공업적 관리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공업적 관리체계는 사료나 약품사용이외에도 가축사육과 관련된 환경 등이 포함되며, 실제로 CODEX 기준에서 사용가능한 퇴비원료는 유기축산을 통해 얻어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에는 CODEX 기준에서 청하는 유기축산 농가가 하나도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CODEX 유기축산 기준에는 사료나 수의약품 또는 기타 첨가제의 사용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소와 같은 초식 가축은 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초지 내에도 적절한 가축 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가축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축사 내 온도가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공조기능을 갖추어 축사에 항상 깨끗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유기축산은 자연변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계의 경우 암·수의 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유기축산의 경우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을 가지고 사육되는 가축의 배설물을 다른 조건들이 유기축산에 부합되는 경우 유기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의 여건상 이런 것들로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겨냥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의 CODEX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논의로 하더라도 중국 내의

인증기관이 인증해준 유기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전된다.

결 앙

친환경농업은 농업생태계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농업이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품질 인증제도 중 저농약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친환경농산물이며, 세계적으로는 전환기유기농산물과 유기농산물만이 유기농산물의 범주에 들어 있다. 특히 유기식품과 관련된 CODEX의 가이드라인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국내의 유기농업이나 유기농산물은 세계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에 적합한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노력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기농산물은 자국 내 인증기관에 의한 이증절차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산 유기농산물의 수입 등에 따른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대책과 아울러 유기농산물 및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연구와 대 농민 및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정무남 (2003)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기술개발 계획,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정책과 실천방안, 경북대학교 농산물 품질·안전성평가연구소
- 김상법 (2003) 친환경 농산물 품질 관리 제도,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정책과 실천방안, 2003 학술심포지엄, 경북대학교 농산물 품질·안전성평가연구소
- 서종혁 (2003) 친환경 유기농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농업기술, 한국환경농학회·농촌진흥청
- 배원길 (2003)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농업기술, 한국환경농학회·농촌진흥청
- 허장 외. (2001), 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방안, 농촌경제연구원
- 허장 (2002) 세계 유기과일과 유기채소 시장동향, 세계농업정보, 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섭 (2002) 유럽 유기농식품의 소비 전망, 세계농업정보, 농촌경제연구원
- CODEX (2001) Guidelines for 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
- 한국유기농협회, <http://www.organic.or.kr/>
- 농림부 (2003)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